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8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94%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18%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94%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18%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2. 펀드명 :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8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반영
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04월 18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8일 1)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반영 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UBS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UBS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은 제외)(이하 "채권"이라 함)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이하 "채권"이라 함)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투자제한 **- 하나UBS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투자제한 **- 하나UBS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투자>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투자>**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69%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76%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04월 18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69%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1.76%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 BM지수 변경
- 부책임운용역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2.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2.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및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하로 한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 39 조의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 중 50%(연 1000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신탁 추가)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8일 - 모투자신탁 추가 - BM지수 변경 - 부책임운용역 변경(조익환 → 여종훈)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table>
<tr><td>사항</td><td>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td><td>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추가)</td><td>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2">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주요 투자 대상</td><td>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td></tr>
<tr><td>투자 목적</td><td>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td></tr>
</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td><td>50% 이하</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 40%이하를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내용</th></tr>
<tr><td>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0% 이하</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 40%이하를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td></tr>
</table>

<table>
<tr><td></td><td>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추가)</td><td>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별첨 1]</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이상</td></tr><tr><td>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td><td>50% 이하</td></tr></table>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50%) + (매경 BP 종합채권지수(A-이상)*5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생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이상</td></tr><tr><td>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0% 이하</td></tr></table>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50%)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5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별첨2]</td></tr>
<tr><td>제3부 집합투자기</td><td>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 (KOSPI*50%) +</td><td>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 (KOSPI*50%) +</td></tr>
</table>

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5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 * 50%) + (매경BP종합채권지수 * 5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듀레이션 3.5 +/- 0.5년) *5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설정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KOSPI * 50%) + (매경BP종합채권지수 * 50%), 2017년 2월 9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KOSPI*50%) +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5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추가>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추가></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이상</td></tr>
<tr><td>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0% 이하</td></tr>
<tr><td>유동성 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td></tr>
</table>

<table>
<tr><td></td><td>(3) 비교지수(Benchmark)
(KOSPI*50%)+(매경 BP 종합채권지수(A-이상)*50%)
※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생략)</td><td>권]
<table><tr><th colspan="2">투자비율</th></tr><tr><td>채권</td><td>60%이상</td></tr><tr><td>어음</td><td>40%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이하</td></tr></table>
(3) 비교지수(Benchmark)
(KOSPI*50%)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50%)
※ 이 비교지수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이상</td></tr><tr><td>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td><td>50% 이하</td></tr></table>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td><td>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이상</td></tr><tr><td>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50% 이하</td></tr></table>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table><tr><th>모투자신탁</th><th>투자목적</th></tr><tr><td>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td></tr></table></td></tr>
<tr><td>II.</td><td>[1]투자전략</td><td>[1]투자전략</td></tr>
</table>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 * 50%) +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 * 5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 * 50%) + (매경BP종합채권지수 * 5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50%)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듀레이션 3.5 +/- 0.5년) *5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설정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KOSPI * 50%) + (매경BP종합채권지수 * 50%), 2017년 2월 9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KOSPI*50%) +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5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별첨1>

-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자산유동화어음(ABCP)포함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5.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6.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환매조건부 매수 또는 매도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별첨2>

-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투자전략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기본적으로 듀레이션 1.8 년 수준을 유지하되, 금리전망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 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은 약 2.7 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써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는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개별종목분석에 의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물의 채권 대비 저평가,고평가를 활용하여 매매하기도 합니다.

(3) 수익률곡선 전략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만기구간의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K-1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BM지수 변경
-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운용역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 하나UBS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3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으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으로 한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8일
- 모투자신탁 추가
- BM지수 변경
- 책임운용역(오현정 → 유지용) 및 부책임운용역 (권태남 → 여종훈) 변경</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오현정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권태남
다.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유지용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다.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td><td>70% 이상</td></tr>
</table></td><td>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td><td rowspan="2">50% 이상</td></tr>
<tr><td>하나UBS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r>
<tr><td>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0% 미만</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추가></td>
<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3">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주요투자대상</td><td>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td></tr>
<tr><td>투자목적</td><td>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관리</td></tr>
</table>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투자집합투자기구]
가.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내용</th></tr>
<tr><td>하나UBS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d>70% 이상</td><td>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집합투자기구]
가.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내용</th></tr>
<tr><td>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td><td rowspan="2">50% 이상</td><td rowspan="2">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r><td>하나UBS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r>
<tr><td>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td><td>50% 미만</td><td>국내채권을 주된</td></tr>
</table>
</td>
</tr>
</table>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 <모투자신탁 추가>	투자신탁[채권] /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 [별첨 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추가> [모집합투자기구] <모투자신탁 추가>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비교지수(Benchmark)** (KOSPI*57%)+(Customized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43%)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 [별첨2]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KOSPI수익률*57.0%) + (매경BP국공채1년지수*43.0%) 주2)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인 (KOSPI수익률*57.0%) + (CD *43.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 (KOSPI*57%) + (Customized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43%) 주2) 이 비교지수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KOSPI수익률*57.0%) + (CD *43.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KOSPI수익률*57.0%) + (매경BP국공채1년지수*43.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추가></td><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2)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하나UBS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혼</td><td>70% 이상</td></tr>
</table></td><td>(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td><td>50% 이상</td></tr>
</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합]</td><td></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추가>
</td>
<td>
<table>
<tr><td>하나UBS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td></tr>
<tr><td>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 모투자신탁[채권]</td><td>50% 미만</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지분증권</td><td>70%이상</td></tr>
<tr><td>채권</td><td>30%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30%이하</td></tr>
<tr><td>어음</td><td>30%이하</td></tr>
</table>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 모투자신탁[채권]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채권</td><td>60%이상</td></tr>
<tr><td>어음</td><td>40%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이하</td></tr>
</table>
</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모투자신탁 추가></td>
<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5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별첨3></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1]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 오현정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권태남</td>
<td>[1]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 유지용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td>
</tr>
<tr>
<td></td>
<td>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57%) + (매경 BP 국공채1년지수*43%)</td>
<td>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KOSPI*57%) + (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듀레이션 3.5 +/- 0.5년) *43%)
- 이 비교지수는 2017년 4월 18일부터</td>
</tr>
</table>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KOSPI 수익률*57.0%) + (CD *43.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KOSPI 수익률*57.0%) + (매경 BP 국공채1년지수*43.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별첨1>

가.투자대상

하나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지분증권	7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2.채무증권	3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3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어음	3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취득 시 A3- 이상이어야 한다.
5.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장내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	법 제 9 조 제 14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통화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파생결합증권(주식연계채권에 한함)
7.장외파생상품		주식 및 채무증권, 통화와 관련되고 선도환 거래를 포함하며 제 6 호에 상응하는 장외 장외파생상품, 금리스왑 및 토탈리턴스왑 (Total Return Swap)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라.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호 내지 4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자산유동화어음(ABCP)포함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5.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6.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환매조건부매수 또는 매도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하나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합니다.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집합투자증권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6호,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A.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B.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C.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D.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E.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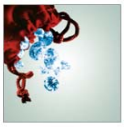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별첨2>

- 하나UBS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운용기본방향



자산배분 전략

- 자산배분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 대비 초과수익 추구
-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인 자산배분은 제한적 범위에서 실시



섹터배분 전략

- 단기적인 업종배분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치 창출을 고려
- 업종에 대한 과도한 분산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시장 국면별로 유연하게 대응



Core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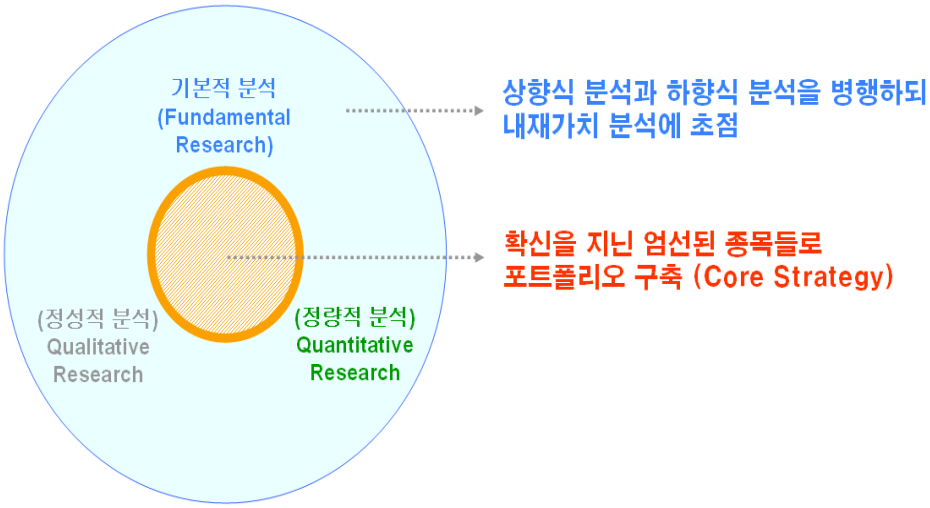
- 상향식 분석(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두고 투자가치에 확신이 있는 종목 발굴에 주력
- 시가총액 및 지수 비중에 관계없이 리서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종목 보유



글로벌 투자관점 반영

- 정기적/비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UBS 글로벌 리서치 조직의 자원 및 경험의 적극적 활용
- 글로벌 시장 투자 관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해석, 한국 기업 매력도 점검

② 세부 전략



※ 코어전략(Core Strategy)란?

- 개별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진정한 투자 가치를 지닌 종목을 선택하는 전략
- 성장 또는 가치 어느 한 쪽 기업에만 치우치거나, 대형/우량주 또는 중소형주 어느 한 쪽 기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투자하는 전략
- 시장을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닌 투자 가치창출에 대한 확신이 서는 종목에 적극적으로 투자
- 리서치팀과 PM 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시장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

* 비교지수 : KOSPI 100%

-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투자전략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기본적으로 듀레이션 1.8 년 수준을 유지하되, 금리전망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 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은 약 2.7 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써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는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개별종목분석에 의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물의 채권 대비 저평가,고평가를 활용하여 매매하기도 합니다.

(3) 수익률곡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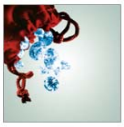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만기구간의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별첨3>

- 하나UBS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운용기본방향



자산배분 전략

- 자산배분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 대비 초과수익 추구
-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인 자산배분은 제한적 범위에서 실시



섹터배분 전략

- 단기적인 업종배분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치 창출을 고려
- 업종에 대한 과도한 분산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시장 국면별로 유연하게 대응



Core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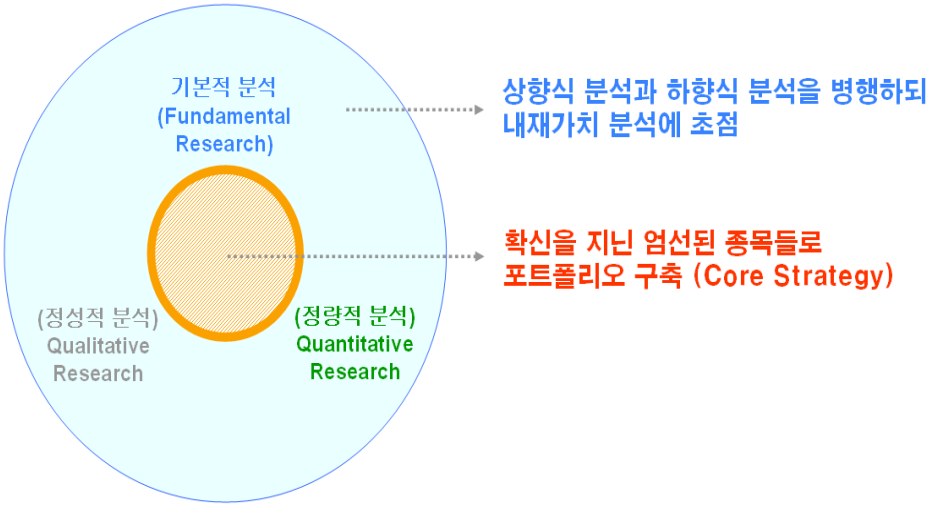
- 상향식 분석(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두고 투자가치에 확신이 있는 종목 발굴에 주력
- 시가총액 및 지수 비중에 관계없이 리서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종목 보유



글로벌 투자관점 반영

- 정기적/비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UBS 글로벌 리서치 조직의 자원 및 경험의 적극적 활용
- 글로벌 시장 투자 관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해석, 한국 기업 매력도 점검

② 세부 전략



※ 코어전략(Core Strategy)란?

- 개별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진정한 투자 가치를 지닌 종목을 선택하는 전략
- 성장 또는 가치 어느 한 쪽 기업에만 치우치거나, 대형/우량주 또는 중소형주 어느 한 쪽 기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투자하는 전략
- 시장을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닌 투자 가치창출에 대한 확신이 서는 종목에 적극적으로 투자
- 리서치팀과 PM 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시장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

* 비교지수 : KOSPI 100%

-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기본적으로 듀레이션 1.8 년 수준을 유지하되, 금리전망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는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3) 수익률곡선 전략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만기구간의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추가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3.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 4. 하나UBS 가족사랑짱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K-1호)[주식혼합]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 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 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자투자신탁 추가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3.하나UBS 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 투자신탁(K-1호)[주식혼합]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Best플러스 증권자투자회사(제2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문구 일부 수정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8일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문구 일부 수정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 투자대상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 2 호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 투자대상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포함)에의 투자는 제 2 호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1] 투자전략**	**[1] 투자전략**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운용전문인력** (생략)	**4.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i-사랑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정기갱신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문구 일부 수정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8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정기갱신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문구 일부 수정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투자대상**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 2 호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투자대상**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포함)에의 투자는 제 2 호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제2부 집합투자기구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에 관한 사항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45%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96%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45%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96%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문구 일부 수정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8일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문구 일부 수정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 투자대상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 2 호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 투자대상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포함)에의 투자는 제 2 호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관한 사항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일부 문구 수정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2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포함)에의 투자는 제2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